

고, 지역대표도서관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 등(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자료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법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

도서관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법 제45조)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10월 4 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정보통신부장 노준형

◎법률 제803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업원 수·이용자 수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된다.
제30조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정정할”을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로 한다.

제67조제2항제10호 중 “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제31조제3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사업자의 규모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개인정

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업원이 없거나 서너 명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자에게까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부과라 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 수·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수 등이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해당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현행 규정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당한 정정요구에도 요구받은 대로 정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